

〈별표62〉 심혈관질환(특정15대심장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심혈관질환(특정15대심장질환)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심혈관질환(특정15대심장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2.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I06.0
3. 폐쇄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판협착	I06.2
4.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5. 다발판막질환	I08
6.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7.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4
8.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
9.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6
10. 폐동맥판장애	I37
1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12. 심근병증	I42
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14. 발작성 빈맥	I47
15. 심방세동 및 조동	I48
16. 심부전	I50

주)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심혈관질환(특정15대심장질환)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